

제 242 호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편집 : 공보실장 손알수

전화 75-7834

1972. 6. 10.
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
# 시보

표준공자는 마이크로

필름으로 촬영하였음.

1972. 6. 10.

서울특별시 서민과창

차례

- 조 례  
제713호 서울특별시 특수근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...3
- 규 칙  
제1221호 서울특별시 시보발행 규칙 .....3
- 고 시  
제 78 호 공유수면 배임공사 준공기간 연장허가 .....5
- 공 고  
제 126 호 신탁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공람 .....5
- 사 령 .....6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# 서울특별시

# 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 
특수근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 
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  
1972년 6월 9일

## 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713 호

서울특별시특수근무수당  
지급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특수근무수당지급조례중 다음  
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1 항 중 「별표 5」 다음에 「수  
도사용료부과징수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 
7」을 삽입한다.

별표 7 수도사용료부과징수공무원수당 지급구분표

구 분	3 급	4 급 갑 류	4 급 을 류	5 급 갑 류	5 급 을 류
월수당 지급액	이하 8,300 원	이하 7,000 원	이하 6,600 원	이하 6,300 원	이하 6,000 원

## 부 칙

이 조례는 197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 규 칙

서울특별시시보발행규칙을 제정하여 이  
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  
1972년 6월 9일

## ◎ 서울특별시규칙 제 1221 호

서울특별시시보발행규칙  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에  
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보(이하 시보  
라 한다)의 편찬 발간 보급 기타  
시보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주관) 시보의 편찬 발간 보급  
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은 공보실에서  
주관한다.

제 3 조 (시보의 편찬구분과 순서) 시보  
에 기재할 편찬 구분과 순서는 다음  
과 같다.

1. 조 례
2. 규 칙
3. 훈 령
4. 고 시
5. 공 고
6. 예 규 (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)
7. 시에 관련 되는 법규의 전재

8. 상 훈

9. 사 령

10. 휘 보

제 4 조 (상훈) 제 3 조 제 8 호에 의한 상훈란에는 훈장, 포장, 대통령포창, 국무총리포창, 시장포창, 명예제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, 포장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.

제 5 조 (사령) 제 3 조 제 9 호에 의한 사령란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(일반직 국가공무원 5급을류 이상에 상당한 자) 과 5급을류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 및 5급을류 이상의 지방공무원의 임면, 전직, 휴직, 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.

제 6 조 (휘보) 제 3 조 제 10 호에 의한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.

1. 대통령지시
2. 국무총리지시
3. 시장지시
4. 지방침으로서 하부 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5. 시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
6. 법령에 의한 면허, 인가, 허가, 승인, 단체등록 (사회단체, 법인단체 기타)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7. 시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,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

8.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

9. 기타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7 조 (게재의뢰)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시보게재의뢰는 법무과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국, 관, 실, 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문시행일 당일한 공보실장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시보게재조정) 공보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으로 시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9 조 (시보배부기준) ①각 국, 관, 실, 과, 구청,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, 사업소, 출장소, 동사무소,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,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는 시보를 비치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시보의 게재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동사무소 보기 쉬운곳에 항상 이를 비치하여 보게 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(시보의 공문대체) 시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규정) 이 규칙은 공포와 동시에 1970.9.1자 서울특별시 훈령제301호 서울특별시시보발행규정은 이를폐지한다.

# 고 시

## 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78 호

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기간연장허가  
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기간을 공유  
수면 매립법 제 10 조 2 항의 규정에 의  
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한다.

1972. 6.

서울특별시 장

1. 연장허가년월일 : 72. 6. 7
2. 매립면허년월일 : 71.6.3. (이수  
및 면허번호 419-8808)
3. 피허가자주소성명 : 서울특별시중구 명동  
2가 1번지재단법인  
경성구천주교회유지  
재단대표이사  
김 수 환
4. 매립장소 : 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 
96번지 지선
5. 매립면적 : 4,396.5 평
6. 매립목적 : 녹지조성 및 성역개발
7. 연장허가기간 : 72.6.4-72.12.30.

# 공 고

## 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26 호

신림추가지구토지구획  
정리사업계획공람공고

1.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부 공고제  
47호(71.6.11) 및 건설부 공고제  
4호(72.1.31)로 신림추가지구에  
대하여 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얻어  
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토지구획정리  
사업법제 33 조 1 항 규정에 의하여 14 일  
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  
여드리고 있으니 사업에 유익한 의견  
있으시기 바라며

2. 이번 공고는 71.10.15. 서울특별  
시 공고제 215 호로 1 차 공고한바  
72.3.14자로 교육 및 연구지구로 결정  
됨에 따라 지구계(등고선) 조정과 공  
공용지 배치가 당초와는 달리 되었습니다.  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  
국 구획정리 1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  
이 공람공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토  
지소유자에게 관계서류를 발송하였으나  
미수령자에 대해서 이 공고로 가름 합  
니다.

### 사 업 개 요

1. 사업명 : 서울특별시신림추가 토지구  
획정리사업
2. 시행지구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사당,  
봉천, 신림동 각일부
3. 시행자 : 서울특별시
4. 면 적 : 635,337 평
5. 시행기간 : 1972(인가일) - 1975.12.30.

1972. 6. 9.

서울특별시 장

# 사 령

◎ 1972. 6. 7.

성 북 구 지방조무수 신 태 빈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에  
의거 견책에 처함.

마포구(건축과장) 지방건축기과 한 기 설  
72. 5. 19 총무처 소청심사위원  
회의 결정에 따라 72. 1. 15 자  
감봉 6 월 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.

수 도 국 토목기과(시설과장) 박 원 창  
국가공무원법 제 78 조제 1 호에  
의거 견책에 처함.

성동보건소 지방보건기사보 구 치 서  
72. 5. 19 서울특별시 소청  
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 
72. 1. 15 자 감봉 6 월 처분을  
감봉 3 월로 동일자로 변경  
처분함.

종 로 구 토목과장직무대리 박 성 천  
지방토목기과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  
에 의거 감봉 6 월에 처함.

종 로 구 지방건축기원 유 영 근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  
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.

종 로 구 지방건축기원보 김 성 방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  
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.

중 구 지방건축기원보 라 재 주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  
에 의거 파면에 처함.

중 구 지방건축기원보 김 중 국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  
에 의거 감봉 6 월에 처함.

선 동 구 토목과장직무대리 윤 지 명  
지방토목기과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  
에 의거 견책에 처함.

성 북 구 지방건축기원보 정 호 국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  
에 의거 감봉 6 월에 처함.

서 대 문 구 지방건축기사보 김 학 선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  
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.

서 대 문 구 지방건축기원 배 석 중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  
에 의거 파면에 처함.

마 포 구 지방건축기사 윤 정 명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  
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.

용 산 구 지방건축기원 이 규 영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  
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.

하 수 과 지방토목기사보 신 승 운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  
에 의거 견책에 처함.

급 수 과 지방토목기사 이 경 철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  
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.

서대문병원 지방간호기원보 박 희 지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  
에 의거 파면에 처함.

◎ 1972. 6. 8.  
동대문구보건소 지방행정사무관 김 경 기  
(위생과장)  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의  
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

북악공원관리사무소	김시원	신완수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성북구 관부들	명합.		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
성동구 지방행정사무관	(사회과장)	하희영	성북구수인 지방행정서기 조규원
원에 의하여	그직을	면함.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영등포구	김시원	홍유식	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
단속과 파견근무를	명함.		성북구수인 지방행정서기 이종복
성동구청무	지방행정주사	이문식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지방공무원법	제 69 조 1,2 호의		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
규정에 의거	감봉 6 월에	처함.	성동구청호 지방행정서기보 김종완
성동구청소	지방행정주사보	이병찬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지방공무원법	제 69 조 1,2 호의		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
규정에 의거	감봉 6 월에	처함.	영등포구구로1동 지방행정서기 강용근
성동구주택	지방행정주사	황규진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지방공무원법	제 69 조 1,2 호의		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.
규정에 의거	견책에	처함.	영등포구구로1동 지방행정서기보 김행곤
성동구주택	지방행정주사보	김소구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지방공무원법	제 69 조 1,2 호의		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.
규정에 의거	견책에	처함.	영등포구신정동 지방행정서기보 김홍현
성동구토목	지방행정주사	권영철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지방공무원법	제 69 조 1,2 호의		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.
규정에 의거	감봉 1 월에	처함.	영등포구사당2동 지방행정서기보 송우종
성동구토목	지방행정주사보	김장수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지방공무원법	제 69 조 1,2 호의		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
규정에 의거	감봉 1 월에	처함.	영등포구사당2동 지방행정서기보 정윤용
성동구서민	지방행정서기보	경석호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지방공무원법	제 69 조 1,2 호의		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.
규정에 의거	감봉 6 월에	처함.	영등포구 개봉동 지방행정서기보 임종구
서대문구수도사업소	지방행정서기보	박복태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지방공무원법	제 69 조 1,2 호의		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.
규정에 의거	견책에	처함.	영등포구구로1동 지방행정주사 김봉명
종로구보건소	지방행정서기보	윤갑영	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2 호의

규정에 의거 감봉 6월에 처함.  
 영등포구 개봉동 지방행정주사 최 병 조  
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의  
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.  
 영등포구 신정동 지방행정서기보 한 병 찬  
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의  
 규정에 의거 정책에 처함.  
 영등포구 신정동 지방행정서기보 이 승 옥  
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의  
 규정에 의거 정책에 처함.  
 영등포구 신정동 지방행정주사보 윤 재 열  
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의

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.

◎ 1972. 6. 9.

건축과 지방건축기사보 박 동 희  
 지방공무원법 제 31 조제 5 호의  
 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  
 아파트관리과 지방건축지원보 박 노 선  
 지방공무원법 제 31 조제 5 호의  
 규정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  
 영선과 지방전기기사보 정 진 천  
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

서울특별시